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1-9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상위법령인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
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을 종료하고
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3. 폐지근거

- 1)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[법률 제9051호, 2008. 3.28, 폐지]
- 2) 「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[서울특별시
조례 제4668호, 2008. 7.30, 폐지]

4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

· 공고 : 공고 심사필 제737호

· 기간 : 2011.9.22 ~ 10.11(20일간)(제출된 의견 없음)

(2) 제22회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결과 (원안의결, 2011.10.20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10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.